

2024학년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FAQ

I 장려금 신청 자격

1. 장려금 신청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

☞ 2024학년도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❶ (기본 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을 신청한 자
- ❷ (학력 요건) 직업계고¹⁾ 3학년 및 일반고²⁾ 3학년 中 직업교육 위탁과정 6개월(180일) 이상 참여 학생 (미졸업시 전액 반환)
- ❸ (재직 요건) 중소기업³⁾·중견기업⁴⁾에 취업(재직)이 확인된 자로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자 (고용보험 가입이력 정보로만 심사)

- 1) 직업계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동 시행령) 제91조제1항, 제4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산업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 및 동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일반고 직업교육과정(직업반)
- 2) 일반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 3호에 따른 고등학교 중 직업계고를 제외한 학교
- 3)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 4)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2. 신청화면에 있는 일반계고 위탁과정(180일 이상)이 무엇인가요?

A

☞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 진로를 변경하여 위탁교육기관에서 직업교육(180일 이상)을 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탁교육증명서 제출 시, 직업교육 시작일과 종료일 및 발급일자를 고려하여 발급일 기준으로 직업교육 위탁과정이 6개월(180일) 이상 이수가 확인되어야 장려금 심사가 가능합니다.

3. 장려금 신청 당시, 중소기업·중견기업에 종사 중이어야만 신청 가능한가요?

A

☞ 아닙니다. 중소기업·중견기업 취업예정자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기준일(2024.10.1.)부터 2025.9.30.까지 고용보험 가입정보를 통해 3개월 간 중소기업·중견기업 재직 이력이 확인되어야 장려금 1차 지급이 가능하며,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재직 이력이 확인된 신청자를 우선하여 지급합니다.

※ 기한 내 중소기업·중견기업 재직이 확인되어도 사업 예산 소진 시 지급 불가

4.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금지 대상에는 어떠한 사업이 있나요?

A

☞ 중복참여 금지 대상으로 지정한 「2024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고용장려금, 고용서비스> 중 개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금지 대상】

사업명	부처	비고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3년형은 장려금 수혜 종료 시 가입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의 취업성공수당
장애인취업지원	고용노동부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취업성공수당
인력유입인프라조성	중소기업벤처부	▶ 중소기업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 ※ 중복참여 금지 기간: 장려금 지원 사업기준일(2024.10.1.)로부터 12개월 재직 후 장려금 지급 완료일까지
- 단, 1차만 지원받는 수혜자는 3개월 재직 및 1차 수혜 완료 후 자발적 포기 신청 및 재단 승인일까지 기간
 - 환수대상자는 환수가 완료되기 전까지 타 일자리사업 참여 불가

5. 장려금 신청 시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였으나 최근 퇴사를 하였습니다. 추후 재단에서 심사승인이 될 경우 장려금 수혜를 받을 수 있나요?

A

☞ 네, 가능합니다.

- 사업기준일(2024.10.1.)부터 2025.9.30.까지 고용보험 가입정보를 통해 3개월 간 중소·중견기업 재직 이력이 확인될 경우, 현재 퇴사를 하였더라도 장려금 수혜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6. 졸업 당해연도 대학 진학 시 장려금 지급 불가인데, 대학을 3월에 진학하였으나 4월에 대학을 그만두고 취업하는 경우 장려금 지원이 가능한가요?

A

☞ 졸업 당해연도에 대학에 진학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단, 야간대학,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과 같은 일부 학제의 경우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지급이 가능하며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대학에서 수학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됩니다.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3월에 대학을 입학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비영리법인에 재직 중입니다(사업자등록번호 넷째, 다섯째 두 자리 82). 장려금 지원이 가능한가요?

A

☞ 네, 지원 가능합니다.

- 비영리법인(사업자등록번호 구분코드 82번)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장려금 지급 대상 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사립학교 포함)는 제외)

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에 재직 중입니다. 장려금 지원이 가능한가요?

A

☞ 장려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사업자등록번호 넷째, 다섯째 두 자리 83에 해당하는 기업 및 재단과 협약한 신용정보회사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판단하는 기업)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법」에 따른 기업 또한 중소·중견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9. 재직 중인 기업의 업종이 '부동산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 네, 가능합니다.

- 장려금 심사 시 업종 제한의 요건을 두고 있으나, 부동산업의 경우는 장려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10. 재직 중인 기업의 업종이 '이용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 네, 가능합니다.

- 장려금 심사 시 업종 제한의 요건을 두고 있으나, 이용업의 경우는 장려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11. 부모님이 대표로 있는 기업에 재직 중입니다.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 부 또는 모가 대표인 기업(부모기업)에 재직 중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장려금 신청 전 부모기업 재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추후 발견 시 전액 반환처리)

12. 법인 아닌 종교단체에 재직 중입니다. 장려금 지원이 가능한가요?

A

☞ 장려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법인 아닌 종교단체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호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하는 기업”이 아닌 기업에 해당하므로 장려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넷째, 다섯째 두 자리 89에 해당하는 기업은 장려금 지급대상 제외

13. 일반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나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이수하지 않았습니다. 장려금 지원이 가능한가요?

A

☞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일반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직업교육 위탁과정(180일 이상)을 이수하고 있거나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장려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1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재직 중입니다. 장려금 지원이 가능한가요?

A

☞ 장려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경우 중소·중견 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5. 현재 대기업에 재직 중인데 소득이 낮습니다.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 장려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대기업 재직자의 경우, 장려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은 중소·중견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6. 현재 규모가 작은 외국기업에 재직 중입니다.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 장려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외국기업 재직자의 경우 장려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17. 부사관으로 근무할 예정입니다.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 장려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직업 군인의 경우 장려금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단, 2025.9.30.까지 고용보험 가입정보를 통해 3개월 간 중소기업 재직 이력이 확인될 경우, 장려금 심사가 가능합니다.

18. 사립학교에 재직 중입니다.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 장려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은 중소기업 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만 하는 비사업자, 공공기관, 외국법인,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등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영리법인 중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9. 장려금 지원 대상이 아닌 업종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 ☞ 기업규모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더라도 주점업 등에 종사하는 경우, 장려금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재직 기업의 업종이 제외 대상 업종인지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23학년도부터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5자리)와 국세청 업종분류코드(6자리)를 연계하여 심사
 - 적용 범위 및 기준은 국세청 '기준(단순) 경비율' 자료를 참고

【 중소기업인력법 제3조에 따른 재직 이행 제외 업종 】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5자리)		국세청 업종분류 (6자리)	
세분류 및 세세분류	코드	코드	세부 설명
일반 유흥 주점업	56211	552201	고급주점(독립된 객실)
		552202	빠
무도 유흥 주점업	56212	552203	클럽, 나이트클럽 등
일반 유흥 주점업	56211	552204	관광음식점,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생맥주 전문점	56213	552205	생맥주집(호프집)
일반 유흥 주점업	56211	552206	기타 유흥 주점
		552207	단란주점
		552208	기타 서양식 주점
		552209	대폿집, 선술집(토속주점)
		552210	소주방
일반 유흥 주점업	56211	552211	홀덤펍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1	512293	복권(도매)
		522082	복권(소매)
		924906	복권 발행
무도장 운영업	91291	921904	무도장, 콜라텍, 댄스홀 등
노래연습장 운영업	91223	924903	노래방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924917	도박시설 및 경마 등 배팅 시설
기타 오락장 운영업	91241	924904	전화방
가구 내 고용활동	97000	950001	요리사, 가정부, 보모, 운전사, 가정교사 등

II 장려금 신청 방법

1. 취업연계 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 본인 명의 은행발급 인증서(※발급 전 은행으로 절차 확인)를 발급 받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경로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로그인 → 장학금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신청하기”(메뉴 경로 및 명칭 변경 가능)

경로2. 한국장학재단 모바일앱 → 로그인 → 장학금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 신청하기

2.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이 필요한가요?

A

☞ 2024학년도부터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단, 부모기업 재직여부 심사를 위해 부모 정보를 필수로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3. 취업(재직)보고는 어떻게 하나요?

A

☞ 2024학년도 장려금 신청자의 취업(재직)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정보만 활용하여 심사합니다.

- 고용정보 외 신청자가 직접 취업보고를 위한 서류 제출(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은 2023학년도부터 폐지되었으며, 1차 지급 시 반드시 '25.9.30일까지 고용보험 가입정보가 재단에 전달되어야 심사 가능합니다. 1차 지급을 받은 후 2차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27.3.31.까지 고용보험 가입정보가 재단에 전달되어야 심사 가능합니다.

4. 장려금 신청 시 사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나요?

A

☞ 네,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사전교육 이수는 의무사항 중 하나로 장려금 신청자는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 사전교육: 장려금 신청 시 온라인 동영상으로 교육 진행(장려금 지급 요건, 환수 및 중소기업 이해 등 교육)

5.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증빙서류는 별도의 양식이 있나요?

A

☞ 증빙서류는 「2024학년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 업무처리기준」의 붙임 양식(붙임5 참고)을 활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직업교육 위탁과정 참여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제출 가능합니다. 장려금 신청 페이지에서도 양식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위탁기관의 기관장 서명(혹은 날인)을 받은 후, 장려금 신청 시 업로드

Ⅲ 장려금 지급

1. 장려금 수혜 대상자가 장려금 지원 예산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A

☞ 고용보험정보를 통해 재직기간이 확인되는 순으로 지급하되, 확인일자가 동일한 경우 아래의 우선 선발 기준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① '23학년도 신청자('24년 졸업) 우선 지급
- ② 사업기준일 이후 고용보험 전산정보 입사 확인일이 빠른 신청자(사업기준일 이전 입사자의 경우, 사업기준일을 입사일로 봄)
- ③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이수자**
- ④ 취약계층(기초생활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⑤ 전공연계 취업자
- ⑥ 직업계고 여부 등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2. 장려금 신청 당시 등록한 지급 희망 계좌를 변경할 수 있나요?

A

☞ 네, 변경 가능합니다.

- 신청현황에서 신청서 수정을 통해 등록한 지급 희망 계좌를 변경하면 됩니다. 신청서 수정이 어려운 경우, 취업연계 지원사업 상담센터(1800-0499)로 변경 요청 바랍니다.
- ※ 본인 계좌가 아닐 시 지급 불가

3. 지원기간 동안 일부 기간만 재직할 경우 일부 지급이 가능한가요?

A

☞ 일부 지급은 불가합니다.

- 1차 지급의 경우 지원 기간('24.10.1.~'25.9.30.) 내 3개월(90일) 모두 재직 확인이 되어야 200만 원, 2차 지급의 경우 지원 기간('25.10.1.~'27.3.31.) 내 9개월(270일) 모두 재직 확인이 되어야 300만 원 지급이 가능하며 3개월(90일) 또는 9개월(270일) 중 일부만 재직할 경우 지급이 불가합니다. 재직기간 중 하루만 부족해도 지급이 불가하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IV 재직 이행

1. 재직 이행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A

☞ 1차 지급을 위한 재직 확인 기간은 사업 기준일('24.10.1.)로부터 1년('25.9.30.)까지입니다. 해당 기간 내 3개월(90일) 간 재직 이력이 고용보험정보를 통해 재단에 전달되어야 장려금 1차 지급이 가능합니다. 1차 지원기간 내 3개월 재직이 완료되지 않은 자는 장려금 수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차 지급이 완료된 자에 대하여, 2차 지급을 위한 재직 확인 기간은 '25.10.1.부터 '27.3.31.까지입니다. 해당기간 내 추가 9개월(270일) 재직기간이 확인되면 장려금 2차 지급이 가능합니다.

재직 기간 확인을 위한 기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기준일 이전 취업자: 사업기준일('24.10.1.)부터 재직 시작
- 사업 기준일 이후 취업자: 고용보험 정보상 고용보험 취득일(근무 개시일)로부터 재직 시작

※ 단, 사업 기준일 이전 취업자라고 하더라도 사업 기준일 이후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에서 인정하는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한 날로부터 재직기간이 인정됨

2. 재단에서 운영하는 현장실습 지원금 수혜자입니다. 현장실습 지원금 참여 기간은 장려금 재직 인정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A

☞ 네, 취업연계 장려금 지급을 위한 재직기간 심사 시, 현장실습 지원금 참여기간은 제외됩니다.

3. 국가근로장학 근무 기간도 재직 기간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A

☞ 국가근로장학 기간은 재직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국가근로장학사업 참여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에 채용된 소속 직원이 아니므로, 재직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특례로 중소·중견기업에 근무 시 재직 기간으로 인정되나요?

A

☞ 불가합니다.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특례로 인한 근무는 재직 인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1차 수혜자에 한해 군복무 사유로 인한 재직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취업연계 장려금 신청 후 1차 지원 기간 내 군입대를 해서 재직이 불가능한 경우 장려금 지급을 받을 수 없나요?

A

- ☞ 1차 지원 기간 내 재단에서 인정하는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하여 고용보험정보 상 재직 확인이 가능한 경우, 군입대를 하더라도 1차 장려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재직 인정 기업에서 3개월 이상의 재직 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면 1차 지급이 불가능하며, 재직기간 유예 또한 불가능합니다. 취업연계 장려금 1차 지급을 받았다면 군입대 사유로 2차 재직기간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취업연계 장려금 재직 이행 완료 후,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이 가능한가요?

A

- ☞ 취업연계 장려금 지급 요건인 총 12개월(360일) 재직 이행 이후, 장려금 지급까지 완료되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한국장학재단은 장려금 2차 지급이 종료된 수혜자의 정보를 고용노동부 일모아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수혜자의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사실을 증명하며, 이 때 종료일은 일모아 시스템에 등록된 “참여종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한국장학재단에서 일모아 시스템에 등록한 “참여종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 단, 1차 지급(재직기간 3개월 이후) 후에 개인의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장려금 2차 지원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로 자발적 포기 신청 및 일모아 시스템 등록 후 타 일자리사업에 참여 가능합니다.
- ※ 단, 실제 재직 이행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불가

7. 1차 지급 시 재직하던 기업이 중소기업이었으나, 재직 도중 동일 기업이 대기업 등으로 규모가 변동되었습니다. 재직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A

- ☞ 네, 인정 가능합니다. 최초 선발 시 중소기업으로 확인되어 선발되었으나 기업규모가 변동되어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동일기업에 대한 재직기간은 인정됩니다.

8.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받기 위해서는 한 기업에 3개월(1차), 9개월(2차)을 근무해야 재직이 인정되나요? 장려금 1차 수혜 후 퇴사하고 다른 기업에 이직한 경우, 2차 수혜를 받을 수 없나요?

A

☞ 동일기업에 재직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재취업을 1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에도 1차 지원 기간('24.10.1.~'25.9.30.) 및 2차 지원 기간('25.10.1.~'27.3.31.) 내 장려금 사업에서 인정하는 중소·중견기업에서 근무한 일수는 재직인정 일수에 모두 합산됩니다. 합산한 일수가 장려금 수혜를 위한 총 재직기간인 360일(12개월)이 되면 2차 지급까지 완료될 수 있습니다.

단, 재취업한 기업이 재단에서 인정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 재직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차 지급 시 재단에서 인정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 및 재직하였다가 2차 지급 시 이직하여 대기업 또는 제한 업종 기업에서 재직할 경우 재직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9. 1차 지원기간까지 고용정보로 재직이 확인되지 않으면 연장기간 없이 지급이 불가한가요?

A

☞ 네. 1차 지원기간에 대한 연장 및 유예 절차는 없으며, '25.9.30.까지 고용보험 정보 상 3개월 간 재직 이력이 재단으로 전달되지 않을 경우 지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1차 수혜 후 2차 지원 기간에 대해서는 군입대, 천재지변, 임신·출산, 질병·상해의 사유가 있는 경우 유예가 가능합니다.

10. 군입대, 질병 등의 사유로 지원기간 내 추가 9개월 재직이 불가능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원칙적으로 2차 수혜를 위한 재직 인정기간은 '27.3.31.까지이나, 유예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재단으로 재직 유예 신청 후 재단 승인 하에 최대 24개월까지 추가로 유예가 가능합니다.

【 유예가능 사유 및 증빙서류 】

유예 사유	추가 유예 가능 기간	증빙 서류
군(軍) 입대	최대 24개월	▶ 입영통지서, 입영사실확인서, 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택 1) ※ 직업군인은 추가유예 불가
천 재 지 변		▶ 천재지변 확인 가능 서류(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에서 증빙하는 서류)
임신·출산		▶ 전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등 관련 병원 진단서 등 증빙 가능 서류
질병·상해	진단서 기간 + 2개월 (최대 24개월 이내)	▶ 전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재단 심사 진행 시 추가서류 제출 요청 가능하며, 기간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추가유예 불가)

11. 재직이행 기간인 총 360일(12개월)을 근무하면 장려금 지급이 되는 건가요?

A

- ☞ 장려금 수혜를 위한 재직기간(1차 3개월, 2차 추가 9개월)을 모두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재단에서 최종 재직 이행 여부 심사가 완료되어야 장려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재단은 정기 또는 상시 심사를 통해 재직여부, 기업규모, 재직 이행일수 등을 종합하여 재직 이행 완료여부를 심사하여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단, 장려금 지급 후에도 추후 지급요건 미충족 사유 및 환수 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장려금 환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12. 장려금 수혜 확인서 발급 시 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 ☞ ‘취업연계 장려금 증서’ 및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 확인서’ 는 1차, 2차 지급 이후에 발급 가능합니다. 지급 완료 이후에도 발급되지 않는다면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상담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상담센터: ☎ 1800-0499

V

포기 및 반환

1. 장려금 수령 전이나 후 포기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포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장려금 수령 전 대학 진학, 대기업 재취업, 개인사정 등의 사유로 장려금 포기신청을 할 경우,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려금 1차 수령 후 포기신청을 할 경우,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포기신청을 했으나, 사유 해소 및 단순 변심 등으로 철회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A

- ☞ 불가능합니다. 장려금 수혜자가 포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철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타 부처의 일자리사업에 중복수혜를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동종의 직접 일자리 사업의 중복수혜는 불가하며, 이 경우에는 환수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4. 휴학으로 정규학기에 졸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장려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A

☞ 네, 장려금을 전액 반환하셔야 합니다.

- 휴학·자퇴·제적·퇴학 등 수학 중단으로 정규학기에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 장려금 수혜자 자격 요건 미충족으로 전액 환수 대상이 됩니다.

5. 장려금 반환 및 환수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 장려금 수혜자는 다음의 상황에 따라 자발적으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시 재단에서 환수를 진행할 예정이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학교를 정규학기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24년 고3 → '25년 2월 졸업)
- ② 졸업 당해연도에 대학을 진학(입학)한 경우
 - ※ 진학(입학) 전 의무종사는 인정되며, 야간대학,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진학(입학), P-TECH 과정 및 일학습병행을 위해 폴리텍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에서 직업교육훈련을 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여 환수하지 않음
- ③ 부모기업으로 확인된 곳에서만 재직할 경우
- ④ 중소기업·중견기업 불인정 및 지급 제한 기업에 취업이 확인된 경우
- 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반하는 부정수급이 발견된 경우
- ⑥ 기타 반환 및 환수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6. 환수대상자로 선정 시 추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 장려금 수혜자가 환수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재단은 장려금 수혜자에게 환수금, 환수기한, 환수절차 등을 통지합니다. 이후 통지한 기한까지 환수가 진행되지 않으면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되어 지연손해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